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법제화 및 처벌 기준 강화 등〉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41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확성기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및 소음기준 강화	6
2. 경찰관의 확성기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6. 5.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수인하기 힘든 수준의 소음이 빈발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평온과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소음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정하고, 경찰관의 확성기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 ----- ----- ----- ----- ----- -----별표의-----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소음측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2조(벌칙) ① · ② (생략)	제22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u>
<u>③ · ④ (생략)</u>	<u>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u>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조(벌칙)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u>	<u><삭제></u>
<u>5. (생략)</u>	<u>4. (현행 제5호와 같음)</u>

[개정안 별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24:00)	심야 (00:00~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 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 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 다) 측정한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3.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의 최 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1.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의 상향 규정 및 소음기준 강화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 발의 당시의 소음기준과 비교하여,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야간 60dB이하에서 50dB 이하로, 심야 55dB 이하에서 45dB 이하로 10dB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을 야간 80dB 이하에서 70dB 이하로, 심야 75dB 이하에서 65dB 이하로 10dB 강화하고, 나머지 기준에 대해서는 5dB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 발의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7.>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공공도서관	85 이하	80 이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비고

1. ~ 8. (생략)

소음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부터 일반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도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소음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확성기등 소음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의 위반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형사처벌 등이 따르게 되므로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는 집회 현장의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년 8월 6일 시행)으로 소음기준이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6.>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 4. (생략)
5.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나. 공공도서관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나. 공공도서관
7. ~ 8. (생략)

2. 경찰관의 확성기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개정안은 경찰관의 확성기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소음에 의한 피해는 소리의 발생과 동시에 야기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범위가 점차 넓혀져 왔음을 고려하여 공공 안녕질서와의 조화라는 취지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2조제3항¹⁾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한 경우²⁾,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총포 등 위험한 물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³⁾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확성기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위 행위보다 중한 법정형으로 다스려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등 형벌체계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경찰청은 집회 소음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

-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⑤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